

의안번호	2210639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5.7.25.
추계번호	25D3025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군사훈련영향지 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 복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 지역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2항)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군 갈등 관리, 재난 피해 구제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 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민관군협의체의 설치 등)	영향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 ·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야 함(제1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제6항)	의무규정
3	안 제12조 (긴급생활지원금)	국가등은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 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함(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14조 (피해 보상·지원)	영향지역에서 발생한 군사훈련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 음. 다만, 제13조제1항에서 배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재량규정
5	안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국가등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제17조 (생활환경의 개선)	국가등은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제18조 (주거대책 마련)	국가등은 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영향지역 내 사고 발생 시 해당 시·군·구의 장은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 및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여야 함(제3항) 제3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주거시설 또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 주민에게 장기 주거가 가능한 임대형 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제공 등을 협조하여야 함(제4항) 국방부장관은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우선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음(제5항)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제20조에 따른 민군상생발전형 산업시설 또는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9	제20조 (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 의 수립 등)	협의체는 재난복구계획과 별개로 민군상생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전계획에는 주거환경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 영향지역의 민군상생발전 사업 기본 계획,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 계획, 민간 또는 공공의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0	제21조(주민 이주 및 이익공유형 사업)	국가등은 영향지역 내에서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익 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6조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민관군협의체의 설치 등)	
3	안 제12조(긴급생활지원금)	• 미대상: 타법에 의해 기수행 중임
4	안 제14조(피해 보상·지원)	
5	안 제15조(심리상담 지원)	• 미대상: 기 편성 예산으로 수행 가능
6	안 제1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제17조(생활환경의 개선)	
8	제18조(주거대책 마련)	
9	제20조(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의 수립 등)	
10	제21조(주민 이주 및 이익공유형 사업)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보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라 사고발생 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와 민관군협의체의 설치·운영,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 시행, 피해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주거대책 마련, 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이익공유형 산업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지

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5년간 제정안에 따른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 발생은 2025년 3월 6일 승진훈련장에서의 전투기오폭사고가 유일한 사례로, 사고의 발생빈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사고발생 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와 민관군협의체의 설치·운영 시,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고의 발생빈도 및 회의개최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표 1] 최근 5년간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의 사고발생 현황

연번	장소	사고일시	사고내용	피해현황	피해보상현황
1	승진훈련장 (공지합동)	2025. 3.6.	전투기 오폭	인근 주민 등 부상자 9명 발생 및 주택 유리창 등 일부 파손	부상자 치료 및 손해사정 진행 중

자료: 국방부

- 긴급생활지원금 및 피해 보상 지원의 경우, 「국가배상법」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지원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기 운영되고 있는 군병원의 진료·치료 및 기 예산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방부는 현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검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 병원 진료에 필요한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또한, 군인, 군무원 등 군인력에 대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2025

1)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방부의 배상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연도별)	신 청		처 리				진행(건)
	건수(건)	금액(백만원)	계(건)	인용		기각(건)	
				건수(건)	금액(백만원)		
2020	3,180	3,364,703	1,690	1,588	3,063	102	1,490
2021	2,167	13,240,615	1,425	1,309	5,454	116	742
2022	1,733	963,309	1,064	874	4,145	190	669
2023	1,309	48,432	664	554	2,651	110	645
2024	1,023	143,641	710	470	1,488	240	313

주: 총 예산 관련, 국가배상금은 일반 배상금 예산(국가배상 소송 포함으로 연 171억)에서 지급되는데, 실 지급액은 연 평균 12억 원임

자료: 국방부

년 예산 339억 3,100만원),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2025년 예산 6 억원)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표 2] 최근 5년간 군인력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97,282	310,600	333,325	372,523	373,247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384	1,020	2,744	5,328	6,801

자료: 국방부

-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생활환경 개선, 주거대책 마련, 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시행, 주민 이주 및 이익공유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향후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의 사고피해 발생빈도 및 피해자 규모 및 지원규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